

#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형사공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안 제80조 신설)
-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기재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신설)
-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하여 기재(안 제81조제2항 신설)
- 공탁금의 회수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안 제81조제3항 신설)

- 공탁서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관에게 제출(안 제81조제4항 신설)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공소장 사본으로 갈음(안 제82조 신설)
- 공탁관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83조제1항 신설)
-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전산등록한 후 공탁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제83조제2항 신설)
- 피해자의 주소가 관할구역 안에 없는 경우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기록을 관할공탁소로 송부하여 처리(안 제83조제3항 신설)
-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와 공탁자가 관할공탁소 송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불수리 사유로 규정(안 제84조 신설)
-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때 피공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기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 신설)
-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및 피공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열람청구를 제한(안 제86조 신설)
-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도 그 성

4.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80조부터 제8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형사사건 관련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80조(용어의 정의)“형사공탁”이란 소송계속 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81조(공탁서의 특례) 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제20조제2항제5호의 피공탁자 인적사항 기재를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하여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

③ 공탁금의 회수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형사공탁의 공탁서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2조(첨부서면의 특례) 형사공탁의 경우 제21조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소명하는 서면과 공소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3조(피해자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공탁관은 형사공탁의 공탁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서 부분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하 “피해자 정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전산등록한 후 공탁절차를 진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가 관할구역 안에 없는 때에는 공탁자에게 그 사실과 관할법원을 통지하고,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기록을 관할공탁소로 송부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탁자가 관할공탁소 송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불수리)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탁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공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2. 제83조제3항 단서의 경우

제85조(공탁통지의 특례)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때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통지서 중 피공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기재를 삭제할 수 있다.

제86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제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제59조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및 피공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및 사실증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7조(준용규정)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b>제8장 형사사건 관련 공탁사무처리 특례</b>
<신 설>	제80조(용어의 정의) “형사공탁”이란 소송계속 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81조(공탁서의 특례) 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제20조제2항제5호의 피공탁자 인적사항 기재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하여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

	<p>③ 공탁금의 회수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형사공탁의 공탁서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신 설>	제82조(첨부서면의 특례) 형사공탁의 경우 제21조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소명하는 서면과 공소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 설>	제83조(피해자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공탁관은 형사공탁의 공탁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서 부분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하 “피해자 정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전산등록한 후 공탁절차를 진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가 관

	<p><u>할구역 안에 없는 때에는 공탁자에게 그 사실과 관할법원을 통지하고,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 기록을 관할공탁소로 송부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탁자가 관할공탁소 송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lt;신 설&gt;</p>	<p>제84조(불수리)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탁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공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1.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p> <p>2. 제83조제3항 단서의 경우</p>
<p>&lt;신 설&gt;</p>	<p>제85조(공탁통지의 특례)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때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통지서 중 피공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기재를 삭제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86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제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제59조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및 피공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p>

<p>&lt;신 설&gt;</p>	<p><u>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및 사실증명을 제한할 수 있다.</u></p> <p>제87조(준용규정)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p>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 - 1881